

## 이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0. 12.  
제출자 : 이천시장

### □ 제안이유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구현을 위하여 자동차세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정과 주민세의 한시세율을 계속세율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자동차와 관련 새차와 현차의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함(안 제25조).
  - (1) 당초 : 세액의 100퍼센트 과세
  - (2) 변경 : 자동차 3년 경과분부터 1년에 5퍼센트씩 경감 최고 50퍼센트까지 경감, 12년이상은 50퍼센트 경감
- 나. 소득할 주민세 세율 : 부칙에 규정된 한시세율을 계속되는 세율로 정함(세율 10퍼센트)
  - (1) 당초 :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분
  - (2) 변경 :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과징수분
- 다. 농지세의 과세대상 추가로 인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절).
  - (1) 당초 : 농지세
  - (2) 변경 : 농업소득세

이천시조례 제 호

## 이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보통세는”을 “보통세의 세목은”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농업소득세

제14조제4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 $2 \leq n \leq 12$ )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제4절의 제목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6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농지의 변동신고등”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액”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55호 이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법 제196조의6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대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소관실과		세무회계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세무회계과장 최홍기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시세1담당 한영옥
	담당자 성명 · 전화	한영옥 2194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조 (세목) ①(생략)  <u>②보통세는</u>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  5. <u>농지세</u>  6. ~ 8. (생략)</p> <p>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 ~② (생략)  ④위원회의 <u>위원장</u>, 부위원장 및 <u>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u>위원장</u>, 부위원장 및 <u>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p> <p>제2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  &lt;신 설&gt;</p>	<p>제3조 (세목) ①(현행과 같음)  <u>②보통세의 세목은</u>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  5. <u>농업소득세</u>  6. ~ 8. (현행과 같음)</p> <p>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장 및 위원</u>  ----- <u>위원장 및 위원</u>  -----  -----  -----  -----  ⑤ 및 ⑥(현행과 같음)</p> <p>제2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현행과 같음)  1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 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p>



## 제28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지 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 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농업소

득세

## 제30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제44회 제2차 정례회 -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p>제31조 (중간예납) ①(생략)</p> <p>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u>농지소득</u>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u>농지세액</u>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p>	<p>제31조 (중간예납) ①(현행과 같음)</p> <p>②농업소득세 ----- 농업소득----- 농업소득세액 -----</p>
<p>1. 및 2. (생략)</p>	<p>1. 및 2. (현행과 같음)</p>
<p>제32조 (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한다.</p>	<p>제32조 (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 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33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 · 운영등)</p> <p>①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p> <p>①수입금액 · 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 · 읍 · 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 · 읍 · 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p>④농업소득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부 칙 &lt;1996·7·10&gt;</p> <p>①(생략)</p> <p>②(주민세 소득할 세율에 관한 적 용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범 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lt;개정 98·12·31&gt;</p> <p>1.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p> <p>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p> <p>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p> <p>③(생략)</p>	<p>부 칙 &lt;1996·7·10&gt;</p> <p>①(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③(현행과 같음)</p>
--	--